북한인권

개 관

o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인권문제는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중요 관심사로 보편화됨.

o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와 국제적인 민간단체(NGO)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o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여·야간의 심각한 갈등 속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북한 인권상황의 공개, 규탄행사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집단 간에 역시 심각한 갈등상황에 있음.
o 북한은 "남한 정부가 북인권법을 조작할 경우, 북 인민에 대한 공식 선전포고와 제2의 표적사건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o 북한의 인권문제는 우리에겐 같은 민족으로서 당연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 통일 후 북한의 누군가가 「우리가 죽어 갈 때 당신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 온다면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함.

o 이와 같이 북한 인권문제는 심각한 수준의 현안문제가 아닐 수 없고, 한편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고, 다른 한편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의 타당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됨.

o 이에 대해 인권을 어떻게 개념화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분석하고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논하고자 함.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주요 인권선언과 인권규약

(가) 주요 인권선언

o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과 「미국 독립선언」(1776)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천부적 인권과 주권재민의 원칙을 제시하고, 미국 독립선언은 천부적 권리 가운데 생명,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자명성과 주권재민사상과 저항권을 확인함.

o 「프랑스의 인권선언」(1789)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으로서, 국가질서의 영원한 기초를 형성한 선언임, 권리선언 전문의 "인권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바로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하나의 엄숙한 선언을 통하여 인간의 자연적이고 불가양의 신성한 권리를 결의한다."라는 규정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

o 유엔의 「세계인권 선언」(1948)
인권존중을 위한 국제협력을 유엔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인권선언 전문에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양여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은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으로서,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모독하는 만행"으로 규정함.

o 「비엔나 인권선언」」(1993)
인권의 증진과 보호가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임을 재강조함.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존중과 준수를 위한 유엔의 노력은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명시함.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증진과 보호는 보편적이어야 하며, 조건 없이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주요 국제인권규약

o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선언적 성격을 넘어 실천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모든 사람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형벌을 받지 아니하며, 노예상태, 강제노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가정과 모든 어린이는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o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유엔헌장과 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간존엄성 존중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의 성실한 준수가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함.
"모든 사람들은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인권의 개념

(가) 인권의 정의

o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한 존재인 인간에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 즉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인권임.

(나) 인권개념의 다의성

o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자유롭고 독립한, 생래의 권리라든가, 평등하게 창조된 인간이 창조주에 의하여 부여 받은 불가양의 권리, 또는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되는 천부적 권리 등 다양하게 정의됨.
o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인정된 천부의 생래적이고 전 국가적인 불가침의 권리로 이해되고, 인권의 이념적 기초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가 보편적 임.
o 그러나 인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인권의 본질이나 범위, 한계, 천부적 성격 등은 아직도 논쟁의 대상되고 있음.

(다) 인권 개념의 정수

o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한 극단주의자의 집단 살인사건에 대한 주한 노르웨이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대사 「디드릭 톤셋」의 언급은, 인권개념의 이해와 인권 신장에 대한 정책 수립에 상당한 시사점이 있음.

- "노르웨이는 극단주의자 한명에 무너지지 않는다."
- "「안데르스 브레이빅」이 더 끔직한 짓을 저지른다 해도 노르웨이는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다."
-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터지더라도 움츠려들지 않고 톨레랑스와 민주주의, 인권 같은 가치를 계속 추구해 나간다."
- "감옥도 인간의 기본적 존엄을 지켜줘야 한다. 사형제를 도입하자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 기본적 인권의 중요 내용

o 생명· 자유 ·생존 등을 포괄한 행복추구권
o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권
o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을 생명권
o 자의적인 체포, 구금, 고문, 비열한 처우를 받지 않을 신체의 자유권
o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o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자유권
o 정치적 기본권, 사법적 청구권 등

인권문제의 재조명

(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변별적 이해

o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전개된 인권선언의 역사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 기본권의 발달사로 볼 수 있음.
o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독일의 인종 학살과 보스니아, 동티모르, 캄보디아 등의 반인륜적 집단학살, 그리고 일부 독재국가의 강제노동, 고문, 공개처형 등 인간존엄성에 관한 우려와 관심이 제고되면서 정치로부터의 기본권 보장 차원을 넘어 인권의 본질로서의 생명권, 생존권에 보다 구체적으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로 접근하게 됨

o 따라서, 인권의 문제는 모든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넓은 의미의 인간 존엄성의 구현과 같은 추상적 접근과는 달리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변별적 이해와 접근이 요구된다 할 수 있음.

(나) 인권개념의 확장

o 국가권력으로 부터의 인권침해가 아닌 열악한 환경이나 자연재해로부터의 생존권적 인권문제가 UNICEF와 WFP에 의해 강하게 추구되고 있음.
예컨대, 동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우간다의 장기간의 가뭄으로 인한 만성적 기아와 아사자의 발생은 행복추구권 이전의 심각한 생명권적 식량권의 문제로 급부상 하고 있음.
북한은 정치적 생존권뿐만 아니라, 생명권적 식량권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우려되고 있음.

o 질병과 가난으로부터의 생존권적 인권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어린이가 질병과 가난으로 매년 970만 명이 사망하고 영양실조로 1억 560만 명이 사망한다고 함.

o 「식수권」과 인간의 「실뢰」도 새로운 인권으로 논의되고 있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의 확보와 경제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신뢰를 중요한 가치로 존중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뱅글라데쉬의 Muhamad Yunus)

북한 인권의 실태

(가)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의 기록

o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의 기록에 의하면 각종 감옥과 강제 구금시설은 아래와 같음

o 6곳에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20만 명을 수용할 있도록 확장

o 구류장과 노동 단련대 각각 210여 곳

o 교화소 23곳, 교양소 5곳, 집결소 27곳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나) 탈북주민의 공개 폭로

o 탈북자의 충격적인 증언
탈북자 이수복씨는 함경도 회령시에 있는 진거리 교화소 수감 시절에 시신처리 담당자로서 1년 6개월 동안 850여구의 시신을 처리했다고 함.
죄수들은 영양상태가 극도로 나빴고 병이 나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함

o 다수 북한 이탈주민의 공통된 폭로는 만성적인 식량난과 기아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은 물론, 생존권적 인권이 열악하고 일부는 생명권적 인권이 무시되고 있고,

o 강제노동과 강제납치도 지속되고 있으며, 인권침해의 최악인 공개처형이 주민의 공포분위기 속에서 집행되고 있다고 함.

(다) WFP의 보고

o 유엔 산하 기구인 WFP는 한 달여에 걸친 광범한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약 600만명의 주민, 특히 여성과 아동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고,

o 즉각 구호대상자를 350만으로 추정, 이에 필요한 2억 2500만 달러를 모금하기 위한 긴급 구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가) 국제적 활동

o 미국의 「북한 인권법(NKHRA)」 제정과 활동
2004년 양원 만장일치의 통과로 제정되었으며, 탈북자의 미국행 허용, 탈북 지원단체 지원, 북한 송출방송의 연장과 함께, 북한 인권문 제 전담 특사를 임명하는 등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음. 현재 「로버트 킹」이 전담특사로 활동하고 있음.

o 국제적 NGO의 활발한 활동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인권은 최악중의 최악" 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앰내스티 인터내셔날의 「샘 자리피」도 대북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임. 디펜스포럼의 「수잔 숄티」는 "독재정권과 타협은 상황개선 못한다." 한국의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북한 인권법'의 계류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치일 뿐 아니라, 법적 의무까지 방기한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 최근 영국과 일본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NGO간의 공동노력이 전개된 바 있음.

(나) 한국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o 국내적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서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과거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함.
-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하여 북한인권문제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은 반면, 이명박 정부는 인권문제를 북한 압박 차원에서 접근하여 진정성과 효과성이 없었다는 비판을 받음.

o 실효적인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이 2008년 발의되고 2010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에 대응하여 민주당은 「북한민생인권법」안을 2011년 상정함. 양 법안 모두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됨. 2012년 6월 새누리당 윤상현의원 발의로 「북한인권법」안이 다시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임.

o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자극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북한 민생인권법」은 인권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결국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일관성 있는 대북지원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o 북한인권법안은 자유권에, 북한민생인권법안은 인도적 지원에 상대적인 초점을 둠으로써 정당간 입장 차이가 뚜렷했음.

o 민간차원의 사회단체의 활동도 전개되고 있으나, 대립되는 단체간의 갈등을 빚고 있음.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2010.2.11) 주요내용**

❍ 북한 인권법은 △ 통일부 내 '북한인권 자문위원회(10인 이내)' 설치 △ 북한인권 실태 조사하는 '북한 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외통부에 북한인권대사직 신설 △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3년마다 국회 보고(통일부 장관) △ 대북 민간단체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세부 조항내용으로는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1조)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립(5조)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 기본계획 및 매년 북한 인권 증진에 관한 집행계획 수립(6조) △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 직명대사 임명(7조) △ 인도적 지원의 권장 조건(8조) △ 북한인권재단의 설립(10조) △ 민간단체의 활성화 지원(15조) 등으로 구성됨

▣ **민주당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2011.6.14) 주요내용**

❍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이 남북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초당적인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등의 기본원칙 설정

❍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식량, 비료, 의약품 지원 등의 지원을 규정(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통일부에 담당기구 설치)

❍ 남북간의 인도주의 사안인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에 관한 사항과 북한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생활지원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보존·발간 역할을 하는 인도주의 정보센터 설치

❍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일부가 북한 인권증진과 인도지원에 관한 사항 보고하도록 함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북한 인권정책의 기조와 이원적 접근

(가) 북한 인권정책 기조

o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책은 정부의 포괄적 대북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추진되어야 함.
따라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구현을 위한 과정에서 남북의 공존·공영 속에서 북한 인권정책도 추진 되어야 함.

o 대북 인권정책은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의 원칙은 정치적 사안과 인도적 사안을 분리하고 있음.

o 포괄적인 인권문제로부터 모든 인권의 근원인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은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음.
생명의 보전을 위한 식량권, 자연재해로부터의 생존권, 질병으로부터의 생존권은 인권의 본질로서 여타의 인권에 우선해야 함.

(나) 생존권적 생명권을 위한 정책방향

o 남북간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고,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지켜줄 가치가 있음.

o 필요 식량의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기술의 장기적 지원이 필요함.

o 자연 재해로부터의 생존권 생명권을 지켜줘야 함.

o 열악한 의료체계의 지원과, 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특별지원도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추진해야 함.

o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 간의 갈등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처리된다 해도, 정부의 입장에서 생존을 위한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결정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다) 신체적, 정신적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o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대북정책 및 인권정책의 유동성이 배제된 정책 일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관성의 문제가 조정 되어야 함.

o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가 효과적임.
김정일 경호원 출신인 탈북자 이영국씨에 의하면, 북한은 대외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함.

o 북한의 남한에 대한 입장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개입보다 국가간의 협력체제에서 영향력의 행사가 실효적임

o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제 NGO와의 연계 및 지원

o 학자 또는 인권문제 전문가에 따라서는 대북인권문제 접근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자극을 우려하기도 하나, 이는 목표의식이나 문제의 본질과 괴리된 것으로 보임.

(라) 종합적 북한인권 개선 계획 수립

o 포괄적 접근, 실질적 개선, 협력적 관점의 원칙하에 북한인권 개선 청사진 마련
- 사회권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 아래 식량, 의료, 보건, 교육 등 분야별 남북 협력사업 추진
- 긴급한 생존권 개선과 관련해서는 확고한 지원 의지, 투명성 제고, 남북간 기술협력을 묶어 추진
- 종교의 자유 탄압, 대규모 식량난 등(자유권, 사회권을 망라해) 명백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에서 능동적인 입장 표명

o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
- 북한인권 실태 파악 및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위해 국제인권기구와 긴밀한 협력
-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일관된 자세(찬성투표)를 견지하되 결의문안 작성과정을 주도해 건설적, 협력적인 인권개선을 추구

o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 북한체제와 관련된 일부 시민적·정치적 권리, 구조적 인권개선 문제에 관해서는 실효성과 남북관계의 측면을 고려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율적 지원을 허용해 일관성을 유지하되, 정부 차원의 지원은 사안과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

o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 법률, 학술 등 인권개선 관련 분야별 남북대화 추진

결 론

o 북한인권 문제는 통일을 위한 정책이 아님.
그러나, 접근방법에 따라서는 통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저해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정책적 혜안과 철학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o 주한 노르웨이 대사가 보여 준 인권에 대한 신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지대함.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우리국민의 신념과 인권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야 할 시점으로 사료됨.

o 우리는 60년 이상의 분단국가로서 장기적인 정책 비전이 필요한 분단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단기적인 정책으로 인식됨.
미국의 「키신저」는 미국이 100년을 내다보는 비전에 비해 1000년을 내다보는 중국의 비전에 놀랐다는 일화가 있음. 우리는 5년 단위로 시간을 재고 있음.

o 우리 내부의 사회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통일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에도 중요한 전제가 될 것임.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Integration of Society